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참좋은노인복지센터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나.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

분류	수가(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15%)	40%경감대상자(9%)	60%경감대상자(6%)
30분이상	17,450	2,618	1,571	1,047
60분이상	25,320	3,798	2,279	1,520
90분이상	34,120	5,118	3,071	2,487
120분이상	43,430	6,515	3,909	2,606
150분이상	50,640	7,596	4,558	3,039
180분이상	57,020	8,553	5,132	3,422
210분이상	63,530	9,530	5,718	3,812
240분이상	70,080	10,512	6,308	4,205

다. 수급자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본인일부 부담금감경을 위한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기초수급권자	0%

라. 급여비용의 가산¹⁾

가산 종류	가산비용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1)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함